



원유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건의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은 국내 에너지 공급 및 석유화학산업 원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총산출액,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효과, 간접세 납부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찍부터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석유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주요 선진국이나 중국·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에너지 안보 및 자국 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완제품인 석유제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율(5%)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비경쟁원료에 대한 중심관세율이 1~2%인 점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관세율의 경우 2001년 이후 할당관

세 7%를 적용함으로써 원유 관세율 5%와 2%P 만큼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그 폭이 미미하여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 소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현실을 고려하고, 에너지 수급안정 확보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비지정제주의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국내 석유정제업자와 고정비 부담이 없는 석유수입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Rule) 정립하는 차원에서 원유관세 인하는 시급한 것으로 정유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및 품질규격과 석유수요의 경질화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

재 20% 미만인 국내 정제시설의 고도화 비율을 높여야 하며, 고도화시설 투자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원유관세 인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려 등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국제 유가 불안에 대비한 석유공급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도 원유 관세인하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의 관세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관세율 연구’ 보고서에서도 원유 관세의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주종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에 기초하여 소비자정제주의를 견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고도화시설에 대한 자원배분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효과 및 생산파급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원유 관세를 무세 또는 저율로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양자간 동일한 금액(14원/ℓ)을 부과하고 있어 원유 관세문제와 동일하게 공정경쟁 취지에 어긋나며, 석유수급안정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명칭은 다르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 등의 목적으로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관세 이외에 유종별로 차등화된 공적 부과금을 거두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원유에 대해서 부과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원유 및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를 추진하였으나, Standstill 조항 적용 논란으로 시행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의 경우 제품간 차등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비관세장벽 존재 여부가 Issue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1999년 이후 석유제품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이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시점에서의 수입부과금 차등화 재추진에 Standstill 조항이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석유산업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원유 관세제도와 함께 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화된 석유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틀’을 유지함과 동시에 에너지 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원유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유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를 건의드립니다. ●

